

#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1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13년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,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2014년 10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2022년 11월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탁기간(3회차)이 종료함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확장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
- 「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## 2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운영 필요
- 다양한 민간단체,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·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
⇒ 직접 운영 보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필요

## 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### 1) 사업목적

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

### 2) 위탁사무 내용

- 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
- ②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·설비 등의 제공
- ③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
- ④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·컨설팅
- ⑤ 비영리조직(NGO 포함)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- ⑥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
- ⑦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⑧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
- ⑨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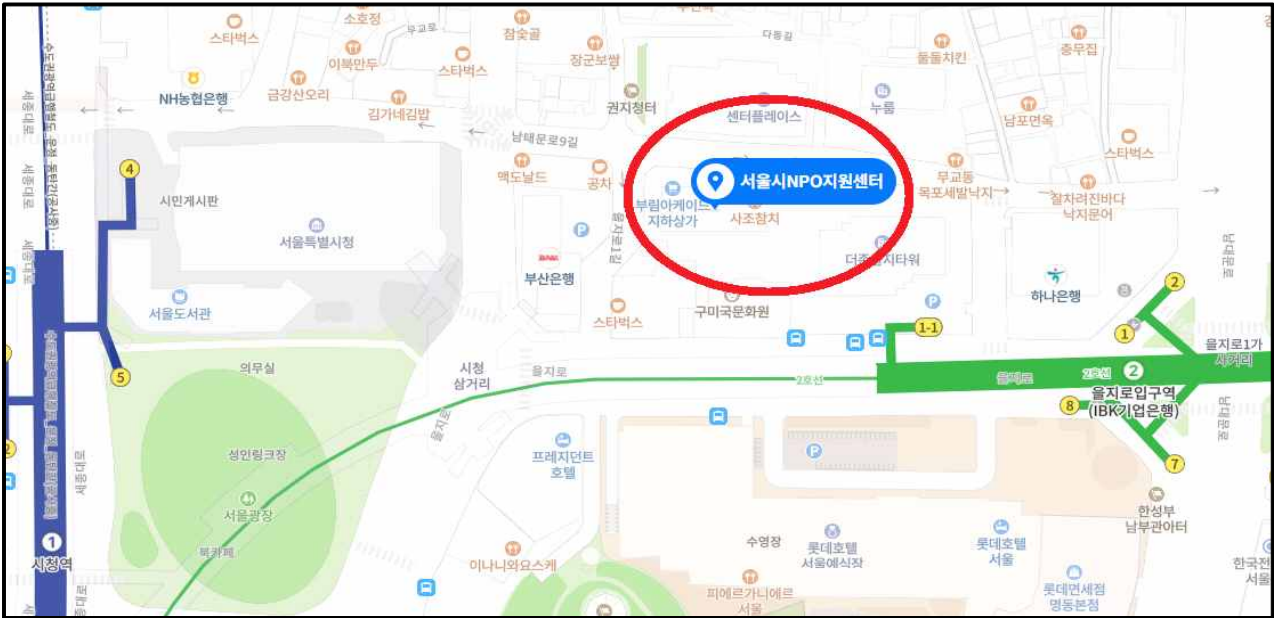
- 명 칭 : 「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」
- 개관시기 : 2014년 10월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, 1·2층(을지로1가, 부림빌딩)

○ 시설규모 : 전용 867.4m<sup>2</sup>

- 1층 : 열린 공간(310m<sup>2</sup>, 약93평) ⇨ 대강당, 전시공간 등

- 2층 : 사무 공간(557m<sup>2</sup>, 약169평) ⇨ 협업공간, 회의실, 사무실, 교육장 등

〈 위치도 〉



#### 마. 민간위탁기간

○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2022.11.15. ~ 2025.11.14.)

#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 → 적격자 심의 → 수탁자 선정

##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2022년 소요예산 : 1,555백만원

- 민간위탁금 1,555백만원(인건비 823, 운영비 403, 일반관리비 20, 사업비 309)

아. '22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및 제22조(센터의 위탁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「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NPO지원센터) 보고서」

※ 작성자 : 시민협력과 시민협력정책팀 권미영(☎2133-6307)